

부부폭력 개입 프로그램의 과정평가와 추후평가

Procedure Evaluation and Follow-up Evaluation on the Conjugal Violence Intervention Program

이 정연

목포대학교 소비자아동주거학과

Lee, Jung Yeon

Dept. of Consumer, Child, & Hous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was focused on evaluating the intervention program for preventing the recurrence of conjugal violence. It was based on family system perspectives because the conjugal violence was considered as the result of dysfunctional interactions between spouses. Especially, a follow-up study was conducted by the telephone interview one year later after the program ended. There were some findings as follows: First, the physical violent behaviors never reoccurred, but the verbal ones still continued. Second, this program had an effect on decreasing the recurrence of conjugal violence.

Key word: conjugal violence, family violence, family systems approach

I. 문제의 제기

그동안 사적인 문제로만 여겨졌던 가정폭력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 시행되기에 이르렀고, 경찰 및 사법기관이 개입하여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주거공간으로부터 격리시키고, 가해자에게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

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광범위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여성들이 주로 상담기관 또는 매맞는 아내를 위한 쉼터를 찾아와 상담과 지원을 받았을 뿐, 가해자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근본적인 가정폭력의 근절이 힘들었으나,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직접 개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피해여성을 원조하는 것으로부터 폭력남편의 행동변화를 목표로 하면서 가해자에게도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 200여개의 프로그램이 존재한다(Dobash & Dobash, 1992).

그럼에도 전세계적으로 가정폭력의 추세는 줄

Corresponding author : Lee, Jung Yeon
Tel : 016-359-2558
E-mail : ljjy5784@yahoo.co.kr

어들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1분마다 4명의 여자가 남편, 남자친구, 또는 전배우자에게 구타를 당한다(Marino, 1994). 가정폭력은 자동차 사고, 강도, 강간보다 여성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가한다(Young & Long, 1998). 또한 김재엽·김동배·최선희(1998)가 전국 1,500여 가정을 대상으로 부부폭력의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부폭력 발생률이 34.1%로 부부 열 쌍 중 세 쌍 이상이 부부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은 실제 발생건수보다 적게 보고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제 발생률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우리 사회에서도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지대함을 반영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 유형은 우선 개인과 집단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나, 가해자인 경우 법원명령에 의해 부과되므로 주로 집단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남성집단과 부부집단을 대상으로 상담이 실시되고 있다. 소집단 형식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단독으로 상담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가 예방된다는 점에서도 권한 만하다. 다음으로, 가정폭력이 개인의 병리적 현상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가족체계의 역기능에 의한 것인가에 따라 접근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중 부부상담이 주로 가족체계이론에 근거한다면 가정폭력이 남편만이 책임이 아니라, 부부간 상호작용에 의한 공동책임이라고 개념화함으로써 (Ganley, 1989), 여성이 폭력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합리화하고, 폭력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인 여성에게도 공동으로 부과한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국내 여러 연구(김재엽, 1996; 심영희, 1996; 최규련, 1996; 최규련·유은희·홍숙자·정혜정, 1999)에서도 폭력은 부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패턴에서 기인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제는 가해자-피해자의 도식보다는 상호책임을 강조하여 부부폭력으로 접근하는 상담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가해자-피해자, 아내구타와 같은 용어대신 부부폭력을 사용하고자 하며, 부부폭력은 20시간 이상의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폭력을 의미하며, 부부폭력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집단상담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부

부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에 적합한 이론모델을 검토하고,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임상가들뿐 아니라, 보호관찰 실무가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본 연구 대상자들의 부부폭력의 실태는 어떠한가?
- 2) 부부폭력 개입프로그램에 대한 과정평가는 어떠한가?
- 3) 부부폭력 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추후평가는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고찰

1. 가정폭력 및 부부폭력을 보는 틀

가정폭력은 한 사람이 종종 위협 또는 폭력의 사용을 포함한 두려움과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해 권리와 통제를 가하는 행동 유형이다. 폭력은 가해자가 배우자를 통제할 자격이 있다고 믿을 때 일어난다(Young & Long, 1998).

가정폭력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상담자들의 학문적 배경과 가치관에 따라, 주로 정신역동적 접근, 인지행동적 접근, 여성주의적 접근, 그리고 가족체계적 접근 등으로 분류되며, 이들은 각기 이론적 강점과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부부치료 모델이 실시되고 있고, 대부분 인지행동적 접근과 가족체계적 접근에 기초하고 있다(최규련 외 3인, 1999). 미국의 가해자 개입 프로그램들을 분석한 Saunders(2000)에 의하면, 접근법에 따른 교육효과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다. 즉, 자조적 접근과 인지행동적 접근, 또는 정신역동적 접근과 여성주의적 인지행동적 접근 간에 어떠한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어

떠한 이론도 가정폭력을 설명하는 단일 이론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떠한 치료모델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은 없다(Wallace, 1996). 그러나 가부장적인 남편에게 주된 잘못이 있다는 관점에서 시도하는 여성주의적 접근이 가해자들의 중도탈락률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은주, 2000), 대상자가 남성 가해자인 경우 여성주의적 관점만을 주도적으로 적용한다면, 내용과 상관없이 대상자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위험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체계적 접근에 초점을 두었는데, 폭력에 관한 가족체계적 관점을 기술하면 가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체계이며, 가정폭력은 개인의 병리적인 현상이기보다는 체계의 산물이다. 가족관계는 계속 피이드백을 주고 받으며 폭력의 과정도 그런 관계 속에 있게 된다. 가해자의 폭력에 피해자가 대항하지 않으면 악순환의 고리와 역기능적인 가족규칙이 그대로 유지되고, 대항할 경우엔 지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폭력행사를 한다. 그러므로 부부체계, 부모자녀 하위체계의 진단과 가족전체의 역동성과 체계의 특성을 진단하고 이해하여, 폭력의 악순환체계를 교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정민자, 2002).

특히, 본 연구에서 부부폭력에 관하여 가족체계적 접근을 채택한 이유를 덧붙이면, 첫째, 가정내에서 폭력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반복, 순환됨에 따라 결국 부부가 서로 폭력을 휘두르게 되어 보호관찰 처분을 같이 집행당한 경우, 폭력에 대한 상호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둘째, 교육받은 후에라도 부부관계가 향상되지 않고는 가정폭력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강교육이 부부관계향상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 셋째,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가정폭력을 진단하는 과정에서는 가족체계의 개념들을 주로 포함하나 (예를 들면, 폭력의 세대간 전수, 역기능적인 부부체계, 폭력의 악순환 등) 실제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치료과정에서는 별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기능적인 부부체계를 회복하도록 부부 상호간에 긍정적인 강화를 학습하고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2. 국내 가해자 개입 모델에 관한 고찰

가해자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사례연구, 실태분석,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등이 이루어졌다. 국내에서 개발된 가해자 개입 프로그램을 이론적 접근법, 개입유형, 교육 효과 및 평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기존 프로그램들은 각 프로그램의 이론적 접근법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이나, 인지행동적 모델과 여성주의적 모델, 가족체계적 모델 등을 주로 택하고 있으며, 이를 중 몇 가지를 결합하여 적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성주향·정민자(2002), 김경신·김정란(2002)과 같이 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통합적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가정폭력의 개념, 평등한 성역할, 폭력에 대한 책임 인정하기, 분노조절 등으로 대동소이하다.

다음으로, 개입양식의 측면을 살펴보면, 교육 대상자는 수강명령 집행을 받은 가해자들로서, 남성 또는 가해자 부부이며, 이에 비해 교육 강사는 대체로 여성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은 대부분이 집단 프로그램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권진숙·전석균, 2001; 김경신·김정란, 2002;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99; 최선령, 2001), 진행방식에 있어서 구조화된 경우와 비구조화된 경우, 그리고 조합된 경우 등 다양하다. 이 중 부부집단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4편 정도이나(권진숙, 1996; 김재엽, 1996; 심영희, 1996; 최규련 외 3인, 1999), 이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모집된 폭력이 경미한 부부집단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실제 가해자 부부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한편, 프로그램의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대체로 사전-사후 검사를 가장 많이 실시하며, 사전-사후-추후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최선령(2001), 최규련 외 3인(1999) 등 소수에 불과하다. 사전-사후 검사는 대부분 질문지 검사에 의한 양적인 측정을 실시하고, 추후면접은 사전-사후검사와 동일한 질문지를 재검사하거나(최규련 외 3인, 1999), 전화로 심층면접을 하는 질적인 측정을 선택하기도 한다. 특기할 만한 것은 최선령(2001)의 경우, 가정폭력의 실체를 측정하기 위

해서는 피해자인 여성배우자의 진술이 더 정확하다고 판단하여 추후검사 시 여성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대상자 뿐 아니라, 가족원들을 대상으로 다면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정확성을 기하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전-사후 검사를 지양하고 방법론상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한다.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한 사전-사후 검사가 모두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뜻이 아니라, 보호관찰소라는 행정기관에서 매 회기마다 소감문을 작성하는 등 통제 상황 하에서 진행되는 집단상담의 경우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솔직한 응답을 하는 데 제한을 받으므로 참여자들이 교육내용에 동조하는 응답을 보고하는 경향이 많아 사전-사후 검사의 본래의 의미가 퇴색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측정방법이 요구되며, 본 연구에서는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여 과정평가와 추후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부부폭력 개입 프로그램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가족체계적 관점에 이론적 토대를 두고 부부폭력 개입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부부폭력의 개념, 원인과 실태를 파악한다.
- 2) 부부폭력에 대한 상호 책임을 인정한다.
- 3) 긍정적인 인지적 전환을 도모한다.
- 4)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기술을 습득한다.

본 프로그램의 하위목표와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이 구성하였으며, 가족체계진단과 가정폭력 실태, 부부교육내용 등을 포함한 교재를 제작하여 대상자들에게 제공하고 구조화된 집단상담을 실시하고자 한다.

표 1. 부부폭력 개입 프로그램의 내용

첫째 회기: 부부폭력 제대로 알기	
목표	1. 가정폭력의 실태와 위험성을 인식한다. 2. 부부폭력의 공동책임을 인정한다.
도입	강사소개, 참여자들의 자기소개, 프로그램의 목적 소개
가정폭력의 개념과 실태	
강의	폭력에 대한 인지왜곡 점검하기: 과소평가, 합리화, 습관화 가정폭력의 원인과 순환 파악하기
발표	가정폭력 비디오 시청 및 소감발표
토론	부부폭력에 대한 공동책임 인정하기
토론	음주와 폭력간의 관계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의 실태
발표	남편의 폭력 실태 부인의 폭력 실태 자녀들의 반응
마무리	소감문 작성, 배우자의 강점찾기(과제)
둘째 회기: 우리 부부의 과거와 현재	
목표	1. 부부간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이해한다. 2. 비합리적 신념을 교정한다. 3. 분노조절 능력을 배양한다.
도입	과제 발표하기
활동	결혼생활 그래프 그리기 행복한 사건, 불행한 사건 가족생활 지식 진단 테스트: 10개문항, ○, × 문제
강의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차이 부정적 강화 줄이기 긍정적 강화 늘이기
발표	원가족의 가족사 발표하기 남편의 원가족 체계 부인의 원가족 체계
강의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하기
사례	배우자의 행동 이해하기 비합리적 신념 변화하기 결혼에 대한 기대 배우자에 대한 기대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기대 분노일지 분석하기 화가 나는 상황, 증상, 행동 회를 낸 후의 나의 감정 나의 행동 결과: 이익과 손해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나의 행동과 배우자의 반응 나의 행동 중 고치기 어려운 점
발표	분노조절- 대안찾기 과거의 방법: 피하기, 참기, 화산폭발, 자해 등 미래의 방법: 피드백으로 확인하기, 유머로 대처하기, 타임아웃 등
마무리	소감문 작성

셋째 회기: 새로운 부부 업그레이드	
목표	1. 부부친밀감을 증진한다. 2. 부부간에 갈등조절기술을 습득한다. 3. 언어폭력을 감소한다.
도입	하트 만들기, 부인의 초상화 그리기
실습	우리는 감성리더 남편의 이미지 / 부인의 이미지 고마운 점, 미안한 점 표현하기 남편의 신호 / 부인의 신호 효율적인 대화 기법 익히기 역기능적인 언어습관 점검하기: 남편 / 부인 공감적인 경청: 언어적, 비언어적 기술 긍정적인 감정 표현하기 부정적인 감정 표현하기
토론	부부문제 해결도우미 — 참여자들간에 상호 지지 하기
활동	부부 함께 노래 가사짓기 부부계약서 작성하기
마무리	평가서, 소감문 작성

2. 프로그램의 측정도구

1) 과정평가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토하는 데에는 프로그램의 결과 뿐 아니라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구성원간의 역동성을 교육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도를 높이이며, 다른 구성원들의 발표를 듣고 서로에게 주는 피드백, 공감 등은 상대적 판단준거로서의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출석율, 참여도,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과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출석율은 출석빈도로 산출하고, 참여도는 집단의 반응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기마다 전문 상담가 2명과 보조 상담원 1명 등 3인이 교육 초기, 중기, 후기에 걸쳐 3회 관찰을 실시하였으며, 관찰한 내용 중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였고 그 외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을 첨가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프로그램의 내용, 진행방식, 강사, 교재 등 4개 영역에 대한 만족정도를 개방형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2) 추후 평가

Rosenbaum과 O'Leary(1986)는 집단의 효과성

을 평가하려면 프로그램 종료후 적어도 6개월 이후에 추후검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한 점을 감안하여(최선령, 2001,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교육 종료 1년 후 전화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주관적인 태도보다는 가정폭력 유무, 재범 여부, 결혼생활지속 등 행동상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중 재범 여부는 보호관찰소의 직원의 도움으로 확인하였고, 전화면접시 대상자와 직접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가족원의 진술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3. 프로그램의 실행

대상자들은 배우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하여 법원으로부터 부부가 함께 20시간 이상의 수강교육을 받도록 권고받은 개인 5명과 부부 5쌍 등 모두 15명이었다. 본 프로그램의 구조화된 주제와 내용에 따라 집단상담을 진행하되, 강사와 대상자들간에 개방적인 토론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회기 1시간마다 10분씩 휴식 시간을 갖고, 마지막 회기 종결 후에는 평가서와 소감문을 작성하여 보호관찰소에 제출하였다. 교육일시는 2001년 1월이며 3일에 걸쳐 총 20시간동안 연속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교육장소는 광주보호관찰소 목포지소이며 가족상담사인 강사 2명과 보조상담원 1명에 의해 이루어졌고 보호관찰소 직원 1명이 전체적인 진행 및 대상자 관리를 지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규모가 소집단인 점을 감안하여 그들의 개인적 욕구에 부응하여 수강교육 종료후 개별상담과 부부교육을 별도로 추가하기도 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모두 병행하였다. 양적 측정으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출석율, 부부폭력의 원인, 가정폭력유무, 재범여부, 결혼생활지속여부 등 객관적인 행동에 대해 빈도, 백분율을 사용하였고, 질적 측정으로는

대상자들의 느낌, 의견, 신념, 기대, 만족도 등 주관적인 태도에 대한 진술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실시 전 개별면담, 교육과정, 교육 직후, 1년후 추후 전화면접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대상자들의 응답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였으며, 결과 분석은 양적인 측정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질적인 자료를 병행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보완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부부폭력의 실태

본 교육의 대상자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듯이, 인구학적 특성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즉,

전체 대상자 중 남성은 10명(66.7%), 여성은 5명(33.3%)이며, 연령은 30세에서부터 53세에 이르기 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학력에 있어서는 국졸이 3명(20.0%), 중퇴 및 중졸이 2명(13.3%), 고중퇴, 고졸 및 상고졸이 7명(46.7%), 그리고 전문대졸 및 대졸이 3명(30.0%)으로 분포되었고, 직업에 있어서도 농업, 일용직에서부터 자영업, 대기업 직원에 이르기까지 나타나,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두루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폭력이 연령, 학력, 직업에 상관없이 어느 계층에서나

분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혼인상태에 있어서는 기혼인 경우 9 사례(90.0%), 이혼인 경우 1 사례(10.0%)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는 부부 중 한 명이 재혼인 경우도 2사례나 있었다. 그리고 가정폭력 초범이 14명(93.3%), 재범이 1명(6.7%)으로서, 대상자들은 대부분 초범이나 가정

표 2. 대상자들의 일반적 배경

(N=15)

구분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자녀수	직업	초범/ 재범	수강명령 시간	폭력발생경위 및 기타
개인1	남	42	중퇴	기혼	4명	양식업	초범	20	아내 무시, 상습적 폭행
개인2	남	30	고중퇴	동거	1명	양봉업	초범	32	남편의 외도, 중도탈락
개인3	남	44	전문대졸	기혼	3명	부동산 임대업	재범	20	상습적 폭행, 개인상담요청
개인4	남	49	대졸	기혼	2명	보험회사 대리	초범	20	부인의 의부증, 이혼 준비 중
개인5	남	55	국졸	기혼 (초혼)	3명	어업	초범	20	잦은 외도로 싸움, 부인은 재 혼, 부부대화교육 요청
부부1	남	29	전문대졸	기혼	2명	의류업	초범	20	협의이혼문제로 싸움
	여	28	고졸			화장품 가게	초범	20	
부부2	남	36	상고졸	이혼	2명	일용직	초범	20	외도문제로 싸움
	여	33	상고졸			경리	초범	20	이혼후 자녀들과 시댁에서 지냄
부부3	남	34	고졸	기혼 (초혼)	2명	자영직	초범	20	의처증, 의붓딸 학대
	여	37	중졸			자영직	초범	20	
부부4	남	47	고졸	기혼	2명	영업직	초범	20	외도문제로 싸움
	여	40	고졸			영업직	초범	20	안면근육마비 증세
부부5	남	50	국졸	기혼	2명	농업	초범	20	아내의 언어폭력 호소
	여	50	국졸			농업	초범	20	시댁과의 갈등

폭력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재범인 경우가 한 명 속해 있다. 이들의 수강명령 시간은 1명만이 32시간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20시간이었다.

다음으로, 부부폭력의 원인 및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부폭력의 원인은 사소한 일로 시작한 경우가 많으나, 본 대상자들은 상대방의 잦은 외도 또는 외도에 대한 의심과 다크침으로 신체적 폭력이 발생한 경우가 6건으로 전체의 60.0%에 달했다(예문: <신고서1> 참조). 그러므로 가해자 남성에 의해 행해지는 가정폭력과는 달리 부부 상호간에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는 외도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 외, 가정불화로 상습적 폭행이 발생한 경우는 2건(20.0%), 협의이혼 문제로 싸운 경우 1건(10.0%), 그리고 시택과의 갈등이 1건(10.0%)이었다.

예문: <신고서 1>

피의자000(남편)은 부부가 경영하는 분식집에서 상피의자 부인이 밤늦은 시간에 다른 남자와 바람피우고 다닌다고 오해한 나머지 양손으로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흔들고, 무릎으로 가슴을 5회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성을 가하고, 피의자 000(부인)은 같은 장소에서 상피의자 남편에게 맞대응하여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등을 10여회 때려 그로 인해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

2. 본 프로그램의 과정 평가

1) 출석율

대상자들의 출석율은 전체적으로 출석율은 93.3%로 높게 나타났다. 첫회기에는 모두 참석하였으나, 개인 한 명이 둘째 회기와 셋째 회기에 불참하였다. 개인집단과 부부집단을 비교해보면 개인집단 경우 교육에 부분 불참한 경우가 1건(개인4, 수강교육 4시간 빠짐), 중도탈락한 경우가 1건(개인2) 있었으나, 부부집단인 경우는 전원 참

석하였다.

2) 참여도

교육 초기에는 참여자들이 강제적으로 동원된 상태이므로 학습동기가 약하고, 개인 그리고 부부 모두 처음에는 교육받는다는 사실 자체에 거부감을 보였고, 서로 얼굴이 알려지는 것을 꺼렸으며, 교육이나 상담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배우자, 법원, 경찰 등을 비난하였으며, 자신이 행한 가정폭력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고, 축소, 왜곡하는 경향 등 가해자들이 일반적으로 지니는 전인식적 단계의 특성을 보였다.

"아침에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을 했는데, 저녁에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안방 문을 걸어잠근거요. 그러니 내가 화가 치밀게 되죠."(개인1)

"아내가 신고해서 내가 오게 된 거지, 사실은 나도 많이 맞았다(흉터 제시). 그러나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신고하겠는가? 내가 그냥 내버려둔 것이다."(개인 5)

"다시 싸움이 나면 나만 손해니까 참는데, 정말 괴롭다. 법이 여자들만 좋게 해준 것이다."(개인 4, 부부1의 남편)

"상담하느니 차라리 감옥에 보내달라."(개인2)

교육 중반기에 이르러, 가정폭력이 남성에 의해 일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된다는 교육 내용에 수긍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교육이 진행될 수록, 서로 공감하는 부분도 생기게 되어 집단 분위기가 활성화되었다. 개인에 비해 부부가 모두 교육받은 경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편만 참석한 경우 의기소침하고 소극적이었으며, 부부들이 교육과정을 주도해가는 역동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개인집단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부부 소집단 교육이 더 참여도를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사람이 아무리 싸워도 점심 먹으려 갈

때는 꼭 같이 가서 육개장을 먹는 걸 보니 부럽다."(개인4)

교육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부부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자 결혼생활에 대한 발표가 활발해졌다. 특히, 각자 제시한 부부문제에 대해 참여자들이 모두 해결도우미가 되어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는 등, 상호지지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심지어는 교육 종료후 정기적인 모임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상담문의도 늘어났다. 실제로 대상자 중 두 사람은 교육 종료 후 별도로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상담을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그 중 한 명(개인 3)은 개인상담을, 그리고 다른 한 사람(개인5)은 마지막 세 번째 회기에 부인이 남편의 수강교육에 동행하였고, 교육 종료후 부부대화교육을 별도로 받기도 하였다. 상담한 결과, 전자의 경우 결혼과 배우자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후자의 경우 피해자인 배우자가 오히려 남편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폭력남편들이 비폭력 남편들보다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하다는 점(Saunders, 2000)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대화교육이 필수적임이 입증되었다.

"아내가 맘딸이라 나를 잘 받아줄 줄 알았다." (개인3)

"남편이 교육받는 모습이 너무 속상하다. 내가 신고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부부1의 아내)

3)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교육 종료 직후 개방형 질문으로 실시한 평가서에 의하면 대상자들은 프로그램의 내용, 진행방식, 강사, 교재에 대한 만족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은 강사와 대상자들간에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대상자들간에도 친밀감이 형성되어 집단상담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결과라고 분석된다. 처음에는 수강교육을 받느라 생업에 지장을 받게 되어 불만이 있었으나, 벌써 끝나게 되어 아쉽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가장 흥미있는 내용으로는 <우리는 감성리더>, <공감적인 경청>, <부부계약서> 등으로서, 실습활동

위주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상의 교육과정을 진행하면서 대상자들과 상담자들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가해자-피해자의 도식보다는 부부상호책임을 인정하고 부부관계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접근방식이 대상자들의 출석율과 참여도,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대상자 15명 중 1명만이 중도탈락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전회기에 모두 참석하여 93.3%의 높은 출석율을 보였고, 프로그램이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진행될 수록 대상자들의 참여도가 높았으며, 대상자들과 강사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그들이 기대한 것 보다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신과 김정란(2002)의 연구에서도 프로그램 참가자의 44.4%가 부부합동교육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자신만 교육에 참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부부관계개선 차원에서 부부교육을 함께 받고자 하는 욕구를 동시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 본 프로그램의 추후평가

교육 종료 1년 후 전화면접으로 대상자 또는 가족원을 통해 가정폭력 정도, 재범여부, 결혼생활의 지속성 등을 조사한 결과, 다음 <표 3>과 같다.

우선 제일 먼저 발견되는 것은 주소지의 변경이었다. 이전 주소지에 그대로 사는 경우는 한 쌍의 부부밖에 없으며 그 외는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가출, 별거, 이혼 등으로 집을 비우거나 아예 이사한 경우에 해당되었다. 이는 예전부터 다 알고 지내는 마을에서 가정폭력범이라는 낙인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직장이나 거처를 옮기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년 간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폭력을 사용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상자 전원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런 통계가 해당 가정에 폭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가정폭력이 있다 해도 다시 신고 할 경우, 가중처벌이 되므로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별거나 이혼 이

후에도 배우자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측정이 요구된다.

"이제 다시 신고하면 또 처벌받으니까, 화가 나도 참지요."(부부4, 부부5).

이에 비해, 언어폭력의 경우 증가한 사례도 있었다. 한 연구(최선령, 2001)에 의하면 언어폭력은 그 전과 별 차이가 없어 줄어들지 않았다. 미국의 여러 가해자 개입 프로그램들을 고찰한 결과 심리적 학대가 상당히 늘어난다는 보고(Saunders, 2000)도 있다. 이는 프로그램 자체가 효과가 없다기 보다는 처벌이 두려워 폭력 행동을 억제하는 대신 언어폭력이나 정서적 학대 등으로 화풀이하는 전이현상으로 판단된다.

"부모님이 지금은 잘 계세요, 아버지가 아프셔서 어머니가 같이 병원에 다니시고, 간호도 하세요. 그러나 다투는 일은 더 많은 것 같아요."(부부4의 아들)

그러나 보호관찰소 직원의 도움으로 가정폭력 재발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한 사례가 재범을 범하여 다시 가정폭력으로 구속된 것으로 나타나 위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는 재발율이 6.7%로 낮은 편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가 가정폭력 초범 및 재범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범자인 개인3의 경우 참여자 중 배우자에 대한 폭력정도가 가장 강하고 지속적이었으나, 개인상담을 추후로 실시하여 분노조절 기술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 반면, 부부3의 경우는 부부가 재혼커플이었으며, 의처증과 계부모·자녀관계의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다시 가정폭력이 재발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들이 다시 문제를 일으켜 결국 이혼하게 되었어. 위자료를 해주느라 내 재산을 다 팔았어. 아들은 일자리 알아본다고 나가서 소식이 없고, 며느리는 애 둘을 데리고 다른 데로 가 버렸어. 설에 한 번 다녀간 뒤로는 연락이 끊어졌어. 집에는 대신 나 혼자 있어."(부부3의 아버지)

표 3. 추후평가의 결과

내용	그렇다	아니다
가정폭력 유무 (n=15)	0(0.0%)	15(100.0%)
재범여부 (n=15)	1(6.7%)	14(93.3%)
결혼생활지속 (n=10)	6(60.0%)	4(40.0%)

표 4 대상자들의 결혼상태의 변화

변화	개인(n=5)		부부(n=5)		
	개인 2사례	개인 3사례	부부 1사례	부부 1사례	부부 3사례
교육 전	별거	결혼 지속	이혼	결혼지 속	결혼 지속
교육 후	별거	결혼 지속	이혼	이혼	결혼 지속

마지막으로, 결혼생활의 지속성에 관해 질문한 결과(<표 3>, <표 4> 참조), 전체적으로는 결혼생활이 지속된 경우가 60.0%로 본 프로그램이 결혼생활의 안정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율적인 것으로 보여지나, 개인집단과 부부집단 중 교육받기 이전에 이미 결혼생활이 불안정했던 세 사례 모두 결혼생활이 해체되었고, 그 밖에 한 사례는 이혼으로 끝나 결국 4사례(40.0%)가 부부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가족해체로 이어졌다. 특히 부부2의 경우 법적 이혼 후에도 부부가 가끔 만나거나, 아내가 시댁에 아이들과 지내면서 재결합을 모색했으나, 결국 이혼으로 종결되었다. 따라서, 교육종료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볼 때, 본 프로그램이 결혼생활의 지속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나, 부부관계가 악화상태인 부부에게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프로그램은 추수교육이 반복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한, 부부관계 향상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안점

가해자 치료의 초점은 가해자에게 분노조절, 문

제해결, 그리고 자기주장을 다루는 새로운 기술을 가르침으로써 폭력을 중지시키는 것이다(Young & Long, 1998). 지금까지의 국내외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들을 고찰한 바에 의하면 어떤 이론적 접근을 했느냐에 따라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 개입유형, 측정방법 상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법론상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체계적 관점을 취하되 기존의 프로그램들과 내용을 달리 하여 부부상호간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부부 관계 향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부부폭력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우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한 개인 및 부부 15명에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과정평가와 추후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가해자-피해자의 도식보다는 부부상호책임을 인정하고 부부 관계향상을 목표로 하는 접근방식이 대상자들의 출석율과 참여도,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대상자 15명 중 1명만이 중도탈락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전회기에 모두 참석하여 93.3%의 높은 출석율을 보였고, 프로그램이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진행될 수록 대상자들의 참여도가 높았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 종료 1년 후 전화면접을 통해 추후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발 정도는 6.7%로 나타나, 본 프로그램이 가정폭력의 재발방지의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상자의 60%가 결혼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고 있어, 교육내용에 부부관계향상을 포함시킨 본 프로그램이 결혼생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미 결혼해체상태에 있던 부부에게는 교육효과가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수강교육이 개인집단보다는 부부집단으로 실행할 경우 교육에 대한 참여도가 높고, 중도탈락률이 적은 점에서 효과가 인정되며, 수강교육을 실시하는 과정과 실시 직후에는 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행동변화를 가져오는 데 효과가 있고, 또한 교육 종료 후 1년까지도 폭력재발방지 효과가 지속되나, 단기간

의 수강교육으로는 악화된 결혼생활을 회복시키기에는 미흡함을 알수 있다.

본 연구는 집단규모가 작고 교육을 1회 실시 후 효과를 평가한 점, 그리고 3일간 20시간이라는 단기적이고 연속적인 교육형태인 점을 감안할 때 만성적인 가정폭력을 근절하기엔 진행상 무리가 있고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우나, 부부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부부폭력을 다룬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제, 가정폭력 집행에 관한 행정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아울러 정책제언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폭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이제는 피해자 보호중심의 정책에서 더 나아가, 가정폭력 사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피해자가 신고해야만 수사가 이루어지는 현행 제도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많은 가정폭력 사실이 축소되고 은폐되기 쉽다. 가해자의 보복이나 위협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되어서야 신고하게 되므로, 관계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가정해체가 자연적으로 따르게 된다. 따라서, 가정폭력이 초기에 발견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신고하는 방안 외에 행정당국에서 가정폭력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상담원을 배치하고 각 가정에 무작위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사례가 있는지를 전화로 확인하고 만일 폭력여부가 확인되면 즉시 사회복지사가 현장을 방문하는 아웃리치(outreach)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1회성이나 전시행정이 아닌 가정생활과 밀착된 적극적인 신고체계가 요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시도별 여성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가정폭력 교육을 받은 상담원을 배치하여 이 업무를 수행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가정폭력을 발굴하는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본다.

둘째, 대상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강사진이 충분히 전문성을 구비하고 지역 사회의 전문기관과의 연계성도 구축한다고 해도, 교육이나 상담이 강제적으로 집행된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대상자들에게 프로그램의 종류나 유형, 강사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한 후

교육이 실시될 경우, 참여도와 교육효과가 증가될 것으로 본다.

셋째, 가해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 업무의 확장이 요구된다. 현재 보호관찰소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고 있으나 해당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후 더 이상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 가해자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권진숙·전석균(2001)의 연구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수강명령 종료 후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 정도의 관찰 및 사후관리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정방문과 전화연결을 통하여 가해자를 감독하는 추후지도방안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구속력을 가지게 되면 가정폭력 재발 위험성이 있는 가정을 보호하고 폭력 재발방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적합한 추수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감을 가진다 해도 실제 가정생활에서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면 다시 폭력이 촉발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따라서 가해자들이 수강명령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더 연장하여 가정폭력의 정도에 따라 최소한 1달에서 3달까지 매주 1회 부부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과정동안 태도와 행동상의 개선이 있더라도, 부부관계가 다시 악화되거나 해체되는 것이 본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으므로, 경찰, 법원, 보호관찰 체계가 협력하여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추수교육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사조정 위원 또는 가족상담 관련 전문기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부부폭력, 가정폭력, 가족체계적 접근

참 고 문 헌

광주가정폭력상담소(1999). 가정폭력 가해자를 위한 집단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광주 여성의 전화 부설 광주가정폭력상담소 연

구보고서.

- 권진숙(1996). 배우자 학대 부부집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권진숙·전석균(2001). 가정폭력 가해자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 개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4, 3: 36-63.
- 김경신·김정란(2002). 가정폭력 가해자 개입 프로그램 효과분석 -아내학대 행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 (1): 137-158.
- 김경신·김정란(2000). 가정폭력 가해자 개입 프로그램 실태분석. *대한기정학회지* 제38권 10:117-132.
- 김인숙(1998). 구타남편에 대한 사례연구: 여성주의 사회사업 개입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59-86.
- 김재엽·김동배·최선희(1998). 한국 가정폭력 실태와 사회제충 변인과의 관계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35호*.
- 김재엽(1996).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개입방안 연구. 동광 제93호, 한국복지 재단.
- 성주향·정민자(2002). 가정폭력 가해자를 위한 가족상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논집* 3 (2): 23-42.
-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1999).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아내구타를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여성문제 연구소 연구보고서.
- 심영희(1996). 가부장적 테러리즘의 발생유지기제와 사회적 대책.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창립 40주년 심포지움* 논문집.
- 안영희(1998). 기혼남녀의 부부폭력 경험과 태도에 관한 연구. 대구 효성가톨릭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이은주(2000a). 폭력 남편에 대한 한국에서의 개입모델 개발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0: 157-190.
- 이은주(2000b). 가정폭력에서 부부합동상담에 관한 비판 및 그 적합성의 사정기준에 대한 고찰. *한국가족복지학* 6: 159-186.
- 정민자(2002). 가정폭력 가해자를 위한 가족상담교육 프로그램. 양지.
- 최규련 외 3인(1999). 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 모형 개발 - 배우자 학대를 중심으로-. 대

- 한기정학회지 37(2): 159-173.
- 최규련(1996). 한국에서의 부부간 폭력에 대한 대책 연구. *한국가족관계학지* 창간호: 103-130.
- 최선령(2001). 한국 아내학대자의 학대행동 감소를 위한 인지행동모델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 가족복지학* 7: 275-311.
- Dobash, R. & Dobash, R.(1992). Women, Violence, and Social Change. London: Routledge.
- Marino, T.(1994). O. J. after math: The battering of American women. Guidepost, 27:12-23.
- Young, M. E. & Long, L. L.(1998).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Viano, E.(1992). Intimate violence: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Washington: Hemisphere Publishing.
- Wallace, H.(1996). Family Violence-legal, medical, and social perspectives. Allyin and Bacon.
- Ganley(1989). "Integrating Feminist of Social Learning Analysis of Aggression." in L. Caesar and K. Hamberger, ed. Treating Men who Batter.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 Saunders, D. G.(2000). Programs for men who batter: A summary of models & recent research. 보건복지부. 세계은행 주최 가정 폭력 예방과 개입에 관한 국제 Workshop. 자료집: 1-12.

(2003. 10. 15 접수; 2003. 11. 26 채택)